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시설에서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의 예방과 대응의 지침을 제정하여 노인들이 존경과 존엄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데 있음

제2조(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제3조(학대의 행위)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행함을 말한다

제4조(학대행위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신체적 폭행)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정서적 수치심)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방임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노인의 이용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착취)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학대 피해자의 대응조치)

노인의학대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시설에서의 학대방지와 응급조치)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교육, 조사, 인식개선 등의 노력을 해 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신고요령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2항)

-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2)신고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3)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4)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보호전문시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 39조의 6 제 3항)